

##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실효 공고

당사는 2019년 11월 26일 이사회에서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65조의 4 및 「상법」 제360조의2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의 주식과 (주)한화갤러리아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(이하 “본건 주식교환”)하여 당사가 (주)한화갤러리아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내용의 주식교환계약 체결을 승인하고, 2019년 11월 26일 (주)한화갤러리아와 동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2020년 1월 29일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에 따라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(주)한화갤러리아와의 주식교환계약을 승인하였습니다.

이에 당사는 다음과 같이 당사 주식의 주주 및 질권자에게 상법 제360조의8에 따른 구주권 제출 및 실효의 공고를 하는 바입니다.

- 다 음 -

### 1. 구주권 제출

가. 구주권 제출장소 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-3 여의도본점 3층 KB증권대행부

나. 구주권 제출기간 : 2020년 1월 31일(금)~2020년 3월 2일(월)

2. 구주권의 무효: 주식교환일(2020년 3월 3일)에 당사가 발행한 구주권은 그 제출 여부와 관계 없이 무효가 됩니다.

※본 공고에도 불구하고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일인 2019년 9월 16일부로 당사의 각 주권은 이미 실효되어 전자등록주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, 당사의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위 구주권 제출기간 동안 실물 주권을 제출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1월 31일

주식회사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

대표이사 김 은 수